

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

수요처와 연계한 구매연계형 R&D과제의 발굴·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도 「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」의 신규 과제 선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7일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목적

- 미래유망 선도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Test-bed 활용·실증을 통한 지역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물산업 생태계 활성화
- 수요처와 맞춤형 제품화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

2 지원유형 및 지원분야

- 지원유형 : 자유공모 (구매연계형 과제* 우대)
 - *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(기술)와 개발 기술을 수요기업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’를 받아 지원하는 과제
- 지원분야 : 물산업 분야의 전체
 - 물산업 정의 및 범위
 - ‘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’에서의 물산업 정의

제2조(정의)

1. “물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수도법」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

나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·관리·운영하는 사업

다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4호에 따른 폐수로 인한 오염 방지 관련 사업

- 라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자원화, 정화, 처리하는 사업
- 마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 물 관련영업
- 바. 「지하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·이용·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
- 사.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 관련업과 해수담수화사업
- 아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물의 재이용 사업
- 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, 건설, 유지관리, 운영 및 장치·기기·약품의 제조·판매, 연구·기술개발,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
- 차. 그 밖에 수자원의 확보, 취수, 도수, 정수, 하·폐수의 처리, 방류 등 물의 전주기에 걸친 경제적 생산활동과 관련된 사업

3 지원내용

- 사업기간 : 최대 21개월 이내
 - 단기과제 : 협약일로부터~2023.12.31.까지(9개월 정도)
 - 중기과제 : 협약일로부터~2024.12.31.까지(21개월 정도), 연차협약
- 지원규모(신규)
 - 총사업비 : 350백만원 내외 (전액 시비)
 - 신규 3개 과제 내외 (과제당 최대 150백만원/년 이내)

구 분	단기 과제	중기 과제
지원분야	단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	선도기술 및 국산화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, 파급효과가 큰 과제
지원기간	1년 이내	2년 이내
지원규모	3건 내외	
과제당 지원금	연간 1.5억원 이내 (최대 1.5억/1년)	연간 1.5억원 이내 (최대 3억/2년)
	* 개발 아이템 및 기업수요에 따라 지원금 규모 조정 예) 소재 및 소형 단위부품 개발은 1억원 이내, 수처리 시스템 및 중대형 장비 개발은 1.5억원 이내로 지원	

※ 신청기업은 개발아이템(단위부품 또는 시스템)에 따라 적절한 지원규모로 제안 필요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단기/중기 지원건수는 변동될 수 있음

기관부담연구개발비(민간부담금) 규모

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기관부담로 하며,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- 대기업 : 총 사업비의 50% 이상을 기관부담으로 하며,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<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(중소·중견기업) >

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(75%)	기관부담연구개발비 (25%)			총연구개발비 (100%)
	현금 (10%)	현물 (90%)	합계 (100%)	
100,000	3,334	30,000	33,334	133,334

지원부분 :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자금

※ 재료구매, 모형제작(Mock up), Pilot Plant, 시험분석, 성능인증 등

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, 현금인건비 지원

-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,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기간 동안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
- ※ 신규인력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

4 신청자격

주관연구개발기관(주관기관)

- 사업 공고일 기준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,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집적단지 분양계약 완료 기업(지역 외 허용)
- ※ 지역 내에서 R&D 수행이 가능하고,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

공동연구개발기관(참여기관)

-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지원기관 등(지역 외 허용)

지원대상 제외
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지원 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할 경우

-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,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 - ※ 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, 기관 포함

□ 수요처 자격 및 범위

○ 자격

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, 기술개발 지원,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해 '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' 발급한 기업(기관)으로서 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출자지분 관계가 없는 기업(기관)

단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

○ 범 위

①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

② 민간부문

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(단,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)

㉡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: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
구 분	내 용	비 고
업 종	물산업 관련 수요 업종	중소기업확인서(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) (발급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http://sminfo.smba.go.kr)
업 력	창업 5년 초과	과제 접수마감일 기준
매 출액	300억원 이상	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
신 용등급	BB(bb) 이상	한국기업데이터(크레딧) 등급 기준

③ 기타부문 :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, 단체, 병원 등

5**우대 및 유의사항**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함

우대사항	가점
수요처의 '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'를 발급받은 중소기업	5점
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(유효기간 이내)	3점
정부 또는 대구시가 지정하는 우수 환경기업인 경우	2점
최근 3년 이내 환경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훈·포장,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 수상자	2점
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연구원 1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	2점
청년(만 39세 이하) 창업 및 여성창업자로서 업력 3년 이내 기업	2점

※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,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
 유의사항

-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,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
- 과제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
6**기술료 징수**

- 기술료 징수는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'성공'으로 평가될 경우, 확정 통보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- 선정과제는 협약체결 시 기술료 납부에 대한 기술료 납부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사업종료 후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
정액기술료 징수율

주관기관	정액기술료 징수율	비 고
대 기 업	지원금의 40%	-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) - 지원금의 범위 :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집행 지원금
중견기업	지원금의 20%	
중소기업	지원금의 10%	

※ 기술료 감경기준은 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”을 준수하여 기술료 납부 시점에 별도 안내함

7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

교부 및 안내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(<https://dgtp.or.kr>)

접수기간 : 2023. 2. 27(월) ~ 2023. 3. 16(목), 18:00까지

제출서류

연번	구분	제출서류	
1	주관	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1부 (한글, PDF)	양식 1
2	주관/공동	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각 1부(2020, 2021년)	
3	주관/공동	사업자등록증 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(해당시)	
4	주관/공동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
5	주관	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	양식 2, 3
6	주관	중복지원금지 협약서 1부	양식 4
7	주관/공동	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	양식 5
8	주관/공동	참여연구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	
9	주관	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(해당시)	양식 6

※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

※ 모든 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(계획서는 한글파일, PDF 모두 제출)

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※ 원본 서류는 추후 제출

○ 접수처 : sorajeong@dgtp.or.kr

8

선정 절차 및 방법

□ 선정 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선정 평가방법 및 기준

-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(발표)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
 - ※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대체 진행할 수 있음
 - ※ 필요시, 서류심사에서 일부 기업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평가기준
 - 사업계획의 타당성, 사업수행역량, 사업화계획 및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
 - ※ 최종 선정기업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

9

문의 및 상담

- (재)대구테크노파크 혁신산업본부 청정에너지센터
 - (손화진 선임) ☎ 053-602-1727, E-mail : hj1122@dgtp.or.kr
 - (정소라 주임) ☎ 053-602-1728, E-mail : sorajeong@dgtp.or.kr